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7. 9 선고 2024가단5071691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주택도시보증공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민 담당변호사 가영현

피 고 1. A

2. B

변 론 종 결 2024. 6. 18.

판 결 선 고 2024. 7. 9.

주 문

1. 피고 A은 피고 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.
2. 원고에게,
가. 피고 B은 피고 A으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30,000,000원을 지급하고,
나. 피고 A은 피고 B과 공동하여 가.항 기재 돈 중 120,017,82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10. 13.부터 2024. 5. 31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,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[별지2]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피고 1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피고 2 : 자백간주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 박근규

별지